

박사 후 과정에 대한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7.11.2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박사 후 과정에 대한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52조의2에 의하여 한국항공대학교 박사 후 과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자격) 박사 후 과정 학생(이하 “연구원” 이라 한다)은 박사학위 취득 후의 전문 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.

제3조 (임용) ① 연구원의 소속은 대학(원), 연구소(센터) 또는 사업단으로 한다.

② 연구원은 대학(원)장, 연구소장 또는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재임용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2>

③ 연구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대학(원), 연구소(센터) 또는 사업단은 본 규정 제5조의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확인 및 면접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.

④ 연구원과의 계약 및 복무관리 등은 연구협력처에서 관할한다.

제4조 (임무 및 권리) ① 연구원은 본교 대학(원), 연구소(센터) 또는 사업단의 연구과제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한다

② 연구원은 소속 대학(원)장, 연구소(센터)장 또는 사업단장의 동의를 얻어 본교의 시간강사로 위촉될 수 있다.

③ 연구원은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5조 (구비서류) 대학(원)장, 연구소(센터)장 또는 사업단장이 연구원을 임명하고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.

1. 지원서 1부
2. 학위증명서 1부
3. 지도교수 추천서(타 대학원 출신은 본 대학 전임교원의 추천서) 1부
4. 연구비 등 경비부담 내역서 1부.

제6조 (대우) 보수 및 모든 경비는 해당 대학(원)장, 연구소(센터)장 또는 사업단장이 연구원과의 계약에 의거 해당 대학(원)장, 연구소(센터)장 또는 사업단장이 책임 관리한다.

제7조 (증명) 연구원에게는 소정의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단, 200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일 부터 시행하되,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